

인증번호 :

개별차량용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

수입자	업체명		성명(대표자)			
	주소		전화번호			
	사업장소재지		전화번호			
인 증 사 항	자동차제원					
	자동차명칭 (형상)	자동차형식 (용도)	엔진형	차종	사용연료	제작사
	엔진배기량	최대출력	변속기	차량총중량	공차중량	선택사양
	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					
	※ 차대번호					
	인증조건					
	1. 이 인증서는 ※란의 차대번호를 가진 개별차량에만 유효합니다.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1조에 따른 결함시정에 대비하여 자동차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 3. 자동차배출가스 관련부품이 제 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4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5. 열화계수 또는 지정열화계수:					
	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. (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. 1, Article 32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71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.)					
년 월 일						
국립 환경 과학원장		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width: 60px; height: 6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0 auto;"> 직인 </div>		